

**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**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계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**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**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 
현대Hit골드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 (금-재간접형)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금-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
- 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09.11.02 - 2010.11.01
- 라. 집합투자업자: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한국투자증권, 대신증권, 유진투자증권, 동부증권

**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**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0.07.30	집합투자기구명	현대hiShares Gold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 (금-재간접형)	현대Hit골드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 (금-재간접형)
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"현대hiShares Gold 특별자산 상장지수투자신탁(금-재간접형)" 이라 한다.	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"현대Hit골드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(금-재간접형)" 이라 한다.
	제34조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	②2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성중목을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	②2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구성중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
	제36조(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등)	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, 지정참가회사 등 이 수익자에게 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)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	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개시일(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, 지

	회사,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.	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계약의 단순한 구조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정보로 내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.	③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신탁계약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제41조(신탁계약의 변경)	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계약의 단순한 구조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정보로 내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.	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제3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④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의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.
제43조(투자신탁의 해지)	②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(이하 "해지기준일"이라 한다)로부터 1월 전에 당해 해지사유, 상환금	②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(이하 "해지기준일"이라 한다)로부터 1월 전에 당해	②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일(이하 "해지기준일"이라 한다)로부터 1월 전에 당해

		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	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 4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.
--	--	---	--

**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**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**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**

- 해당사항 없음

**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**

- 해당사항 없음

**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**

- 해당사항 없음

**6. 회계감사인의 선임 · 해임에 관한 사항**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	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
삼일회계법인	1년	929, 122 원	서면계약	-	-	-	-	-

**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**

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
- 부합함

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적정함

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
- 공정함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
- 적정함

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